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-19호

「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2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○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,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고 있으나,

○ 순천시립예술단의 위·해촉연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시립예술단원의 위·해촉 연령 연장

- 위촉연령 : 만 55세 → 만 58세
- 해촉연령 : 만 57세 → 만 60세

※ 시립예술단원의 위촉기간 : 2년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6. 8. 22. ~ 2016. 8. 26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(순천시의회의장)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61-749-4958, 팩스 061-749-4773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붙임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91호

○ 발의연월일 : 2016. 08. 22.
○ 발 의 자 : 이창용 의원

1. 개정이유

○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,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고 있으나,

○ 순천시립예술단의 위·해촉연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시립예술단원의 위·해촉 연령 연장

- 위촉연령 : 만 55세 → 만 58세
- 해촉연령 : 만 57세 → 만 60세

※ 시립예술단원의 위촉기간 : 2년

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4. 관련법령
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5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단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내로 하며, 정년 해촉연령은 만 60세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촉연령)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 이내로 하며, 정년 해촉연령은 만57세로 한다. …….	제10조(위촉연령) 단원의 위촉연령은 **만 58세** 이내로 하며, 정년 해촉연령은 **만 60세**로 한다. …….